

대구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재나300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리

담당변호사 이형기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14.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4. 선고 2019가단672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310447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대구 달서구 E 답 1,596㎡ 중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은 9/77, 피고 C, D는 각 6/77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7. 12. 26. 접수 제804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갑 제19호증(대구 달서구에서 제출한 사실조회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구 달서구 E 답 620평에 관한 구 등기부등본(갑 제6호증)이 위조되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취지로 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21. 4.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2021. 7. 15. 대법원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 2. 17.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판단누락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취지로 설회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진, 판사 정주희, 판사 유진홍